#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69

발의연월일: 2025. 1. 21.

발 의 자: 박홍근・이수진・민병덕

박상혁 • 이병진 • 진성준

한민수 · 이용우 · 남인순

한정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학력·직업·재산 등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구인자가 이러한 개인정 보를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행위 또한 채용의 공정 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추가함으로써 채용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법률 제 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호 중 "체중 등의"를 "체중·임신여부·병력(病歷)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을 "출신지역 ·출신학교·종교·혼인여부·재산 등의 사회적 조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재산"을 "재산 등의 가족 정보"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요구 금지)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	
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	
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	
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	
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 <u>체</u>	1 <u>刹</u>
중 등의 신체적 조건	중・임신여부・병력(病歴) 등
	<u>ol</u>
2. 구직자 본인의 <u>출신지역·혼</u>	2 <u>출신지역·출</u>
<u>인여부·재산</u>	<u>신학교·종교·혼인여부·재</u>
	산 등의 사회적 조건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3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	
<u>재산</u>	재산 등의 가족 정보